

부천시정보공개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4년 7월 2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4년 7월 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13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04년 7월 8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이해양)

□ 제안이유

-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의 위원 2분의 1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도록 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법률이 개정(2004. 1. 29, 법률 제7127호)되어 이에 맞추어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심의회 위원의 자격을 구체화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2분의 1은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및 제3항)
-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4항)
- 위원은 정보공개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시에는 공무원에 준하여 벌칙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4조제5항)
-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p>○ 정보공개심의회의회시 위원들에게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나요?</p>	<p>○ 지금은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지급하지 않지만 외부전문가들이 참석하게 되면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p>
<p>○ 위원장 직무관련 부득이한 경우 위원장이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 위원 중 연장자로 하였는데 부위원장을 두지 않고 연장자로 한 이유는?</p>	<p>○ 외부전문가가 들어오면 위원장이 유동적이어서 부위원장을 두지 않고 자유스럽게 하기 위해 두지 않았음.</p>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정보공개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60호
의결 년월일	2004. 7. 16 (제113회)

제출년월일 : 2004. 7. 2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심의회의 위원 2분의 1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도록 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개정(2004. 1. 29, 법률 제7127호)되어 이에 맞추어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심의회 위원의 자격을 구체화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2분의 1은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및 제3항)
- 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 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4항)

- 라. 위원은 정보공개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시에는 공무원에 준하여 벌칙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4조제5항)
- 마.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부천시정보공개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정보공개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동법 시행령 제12조”를 “제12조”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2호중 “제16조 및 동법 제19조제2항”을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정보공개기준수립에 관한 사항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구성 등)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그중 2분의 1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1. 시 소속 4급이상 공무원

2. 시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심의회 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일비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2항중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중에서 연장자가”로 한다.

제9조제2항중 “결정한 때에는”을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공개절차에 따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제11조”를 “제13조”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무과장이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정보공개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u>제12조</u>----- ----- ----- ----- ----- ----- ----- ----- ----- -----</p>
<p>제2조(명칭) 시에 두는 심의회는 <u>부천시정보공개심의회(이하“시심의회”라 한다)라 하고 구에 두는 심의회는 부천시○○구정보공개심의회(이하“구심의회”라 한다)라 칭한다.</u></p>	<p><u><삭 제></u></p>
<p>제3조(심의회 의 심의대상)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u>제16조 및 동법 제19조제2항</u>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p>제3조(심의회 의 심의대상) ----- ----- 1. (현행과 같음) 2. ----- - <u>제18조 및 제21조제2항</u>----- -----</p>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3. (생 략)</p> <p>제4조(시심의회 구성) ①시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세무국장이 된다.</p> <p>③위원은 당연직으로 경제문화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감사실장,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으로 한다.</p>	<p>3. 정보공개기준수립에 관한 사항</p> <p>4. (현행 제3호와 같음)</p> <p>제4조(구성 등)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그중 2분의 1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p> <p>1. 시 소속 4급이상 공무원</p> <p>2. 시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p> <p>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⑤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심의회 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p>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구심의회 구성) ①구심의회 <u>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u></p> <p>제6조(사업소등) 직속기관·사업소 <u>및 동에서는 자체심의회를 구성 하지 아니하고 그에 관한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이 행한다.</u></p> <p>1. 직속기관 및 사업소 : 시 심의회 2. 동 : 관할 구심의회</p> <p>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략) ②위원장이 <u>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u></p>	<p>⑥<u>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한 여는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의 규정에 의하여 일비등을 예산 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u></p> <p>〈삭 제〉</p> <p>〈삭 제〉</p> <p>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u>부득이한 사유로 직 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 원중에서 연장자가 -----.</u></p>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심의회 결정사항의 처리)</p> <p>① (생 략)</p> <p>②심의회에서 정보를 공개하도록 <u>결정한 때에는</u> 소관부서에서 신청인의 청구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또는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사항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u>제11조</u>의 규정을 준용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9조(심의회 결정사항의 처리)</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u>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공개절차에 따라---</u></p> <p>③----- ----- ----- <u>제13조</u>----- ----- -----.</p>
<p>제10조(간사등) <u>심의회</u>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u>시의 간사는 총무과장이 되고, 구의 간사는 총무팀장이 된다.</u></p>	<p>제10조(간사) <u>심의회</u>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u>간사는 총무과장이 된다.</u></p>